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10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개명전: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웅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거제시 D 임야 138㎡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18.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6. 12. 접수 제238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H를 상대로 양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8. 16. 'E,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2017가합373)하였다.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9. 6. 27. 위 판결을 취소하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F, G,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3,742,878원 및 그 중 1,0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233,742,878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2019.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2018나12875)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E의 부인으로, 2018. 6. 12. E의 소유인 거제시 D 임야 1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I와 J조합을 상대로, I와 E 사이에 2017. 9. 27. 체결된 E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J조합과 E 사이에 2017. 9. 28. 체결된 E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각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1. 2. 4. 일부승소판결을 선고(2019나12148, 이하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E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며 위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시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았음에도,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E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였고,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발급일이 2019. 10. 16.이므로, 그 무렵 원고는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양도와 관련한 채권은 2012년경 발생한 채권임에도 원고는 그동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당시에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원고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E의 2017. 9. 27.자 매매계약, 2017. 9.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각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이 어떠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선고된 무렵에는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과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선고된 2021. 2. 4.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2023. 6. 5.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